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38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표준의 조문 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표준 조문 체계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조문의 시행일을 상위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1. 27. ~ 2. 16.)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의6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 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 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상위 법에서 조문 체계를 정비(‘제10조제4항’ ⇒ ‘제10조의6제4항’)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박성호 (02-2133-3357)